

대전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1가단133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

전 문

원고A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박항규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변론 종결 2023. 10. 18.

판결 선고 2024. 11. 6.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전 1,10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7. 22. 접수 제72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15세손, E)의 후손 F(28세손, 호 G)은 슬하에 H(29세손)을 두었고, I(I, 31세손)은 H의 차남인 J(30세손)의 장남으로 슬하에 K, L, M, N, O의 다섯 아들을 두었다.

나. 원고는 P중중중회회칙을 두고 있는데, 회칙의 표제부에는 'Q중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충남 공주군 R리(2013. 6. 5. 세종특별자치시 S리로 행정구역관할변경이 있었고, 이하 'R리'라고 한다) T 토지는 1932(소화 7년). 9. 7.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뒤 1932. 10. 19. 같은 해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충남 공주군 V에 주소를 둔 A문중(A門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T 토지는 2021. 7. 12. T 전 1,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W 전 1,103㎡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7. 22. 접수 제7262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G후손인 31세손 'T'을 공동선조로 삼아 V를 본거지로 활동 중인 원고의 소유인데, X, Y이 32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는 'A문중'을 임의로 창설한 다음 원고를 참칭하여 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중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중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2230 판결 참조). 이러한 중중총회 결의 없이 중중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또 종종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할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등 참조).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2021. 8. 23.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였다거나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2021. 8. 23.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21. 8. 23.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적법한 종종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가 2021. 8. 23.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할 당시 하위종중인 Z종중의 종원이 1,374명을 초과하고 있었고, 상위종중인 원고의 종원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31세손 'T'은 다섯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원고 종원 전체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 당시 이미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277명의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대표자 회장 C은 2021. 7. 27.경 AA 외 276명의 종원에게 '종중소유토지(AB 임야, AC 답, AD 전, AE 임야, AF 임야) 불법매각 및 근저당권설정, 불법매각으로 인한 가처분등기경료에 따라 종중소유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소 제기'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21. 8. 23.자 임시총회를 서면결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법적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3) 원고 대표자 회장 C은 AA 외 276명의 종원에게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와 더불어 서면결의서를 함께 송부하였고, 위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 150명, 반대 0명, 기권 127명으로 서면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2021.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C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백효민